구의회 소식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

www.gbc.seoul.kr

강북구의회, 제153회 정례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2011년 8월 30일(화)부터 9월 6일(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53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였다.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 기후가 계속되는 동안 강북구민의 수해예방 및 조속한 복구를 위해 침수지역 현장을 돌아보며 주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해지역 민생현장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한 의원들과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태풍 및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취약시설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가오는 추석은 경기불황 등으로 물가가 올라 구민들에게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추석이 될 전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강북구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외로운 저소득 주민들 보살핌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안건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현재 국 · 시유지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이 1,000분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구유지의 경우는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어 대부료 요율을 조정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용방식의 정착과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우리 구에서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813호, 2011.06.30)의 개정과 관련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 및 같은 법률 부칙 (제10398호 2010.11.24)제2조의 일몰시한이 연장되어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은 조례에 위임하여 개정 조례에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 규정된 관련법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맞는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분들께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 ·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들의 교류와 자립생활에 기여할 장애인회관 건축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설치 · 계약에 있어 강북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해당 조례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우리구의 장애인 등에게 기존의 혜택이 원활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항의 변경사항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한편, 구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촉구 건의(안)

북한산 이용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낙후된 강북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북구 우이동을 기점으로 하는 북한산케이블카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 및 해당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었다.

▣ 제154회 임시회 안내

강북구의회는 제154회 임시회를 10월11일(화)부터 10월18일(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일정은 의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관신청] 강북구의회는 구민여러분의 참관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901-4510~1), 팩스(901-451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청신청] 강북구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회의장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청권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